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
- 전자우편 : ifanger@korea.kr
- 팩스 : (044) 201-7412

### 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(전화 (044) 201-7367, 팩스 (044) 201-74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환경부공고제2020-724호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0일

환 경 부 장 관

###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배출자와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규정과 처리기준을 마련함(안 제14조의3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의2, 제23조, 제63조, 별표 1, 별표 4, 별표 5)

##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폐자원관리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
- 전자우편 : ifanger@korea.kr
- 팩스 : (044) 201-7412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(전화 (044) 201-7367, 팩스 (044) 201-74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048호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법제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, 임차 영농인 등 실제 경작자 보호 및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재결신청 청구 우편제출 방법 개선(안 제12조)

- 재결신청 청구서의 제출 방법을 “배달증명취급우편물” 뿐만 아니라 “내용증명우편물”까지 확대
- 나. 부채부동산소유자 거주사실 입증자료 구체화(안 제15조제1항)

-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입증방법(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) 구체적 명시

##### 다. 농업손실보상 산출기준 통일(안 제48조제2항)

- 실제 소득인정 영농보상 산출기준을 “실제소득”에서 “직전 3년간 실제소득 평균” 금액으로 하여 일반 영농보상기준과 통일

##### 라.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 영농인 권리 보호(안 제48조제5항)

- 현행 규정이 임대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농지법과 일치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구 삭제

##### 마.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(안 제48조제7항)

- 실제 농작물 경작자 확인자료에 “직불금 수령 확인자료” 및 “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”를 추가하여 경작자 인정방법 공신력 제고

##### 바.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현실화(안 제53조제2항)

- 이주대책 혜택과의 형평성, 주택 평균가격 등 고려, 지급한도 상향

##### 사.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명확화(안 제54조제2항)

-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“세입자”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 개선 및 혼란 방지

##### 아.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거주사실 입증방법 마련(안 제54조의2 신설)

-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입증방법(안 제15조제1항 준용) 마련

##### 자. 수용재결 신청 청구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(별지안 제6호서식)

- 보상계획 공고 시 “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”는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